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5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도로과장 백운경】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조례
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

- 「도로법」 제76조 → 「도로법」 제91조 (안 제1조, 안 제3조)

-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 제3조에 따른 원인자
부담금 선납 원칙 및 예외 명확화(안 제3조제4항)

○ 인용법령 현행화 (안 제3조의2제2항)

- 「지방세기본법」 → 「지방세징수법」

○ 순화대상 용어 정비 (안 제3조제3항, 별표1)

- “구배” → “기울기”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하여 (안 제1조, 안 제3조)에는 「도로법」 제76조에서 「도로법」 제91조로 변경하는 내용임.
 - (안 제3조제4항)에는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 제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선납 원칙 및 예외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임.
 - (안 제3조의2제2항)에는 인용법령을 반영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변경하는 내용임.
 - (안 제3조제3항, 별표1)에는 순화대상 용어를 적용하여 “구배”를 “기울기”로 변경 정비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순화를 한 것으로 관계 법령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다만, 원인자부담금이 선납부과원칙으로 납입되지만 예외규정으로 인한 체납이 될 경우 빠른 징수를 통해 도로굴착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